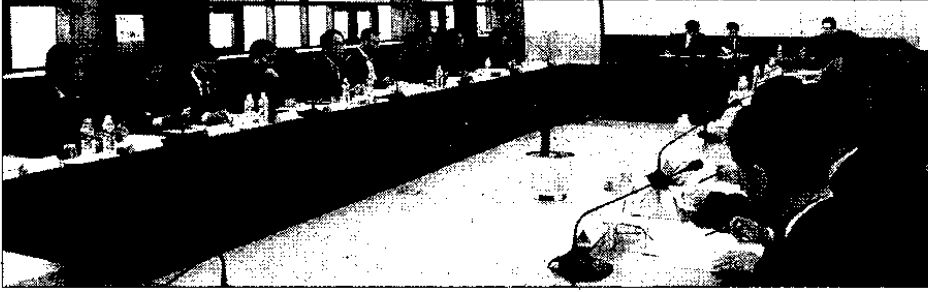


## 【 2016.03.31(목) 강원도민일보 】



**도건설협 운영위**·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30일 오전 도협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했다. 제58회 정기총회는 내달 2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 2016.03.31(목)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2016 회계연도 1차 운영위원회 개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30일 강원도 춘천시 도회 회의실에서 2016 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도회는 이날 2015 회계연도 결

산 및 201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했다. 또 제58회 정기총회를 오는 4월2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아하! 그렇구나

### 구성원 단독 명의 하도급계약 효력 ②

공동수급체의 특정 구성원의 단독 명의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사 건립공사의 수급인으로 결정되었는데, 위 입찰 시 특정 건설회사를 위 공동수급체가 선정한 하도급예정자로서 부대인찰자에 포함시켰고, 그 대표자와 구성원들은 조달청에 수급인으로 결정될 경우 하도급예정자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까지 제출하였는데, 그 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위 하도급예정자인 특정 건설회사의 하도급계약 후에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구청사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 특정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대표자의 자격에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대선고등법원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대법원도 2006. 6. 16. 선고 2004다7019 판결에서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들이 하도급공사 대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 대선고등법원 판결을 긍정하였다.

전화에 든 사례에서 대법원은 Y건설은 X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Y가 공동수급체의 대리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Y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보았다.

Z건설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인 Y와 Z건설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Z건설이 X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Y는 조합원으로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